

한경협

ESG Bulletin

2025. 1 | 제 11 호

K-ESG 얼라이언스 사무국에서는 회원서비스 강화와 ESG 저변 확대를 위해 한경협 ESG경영자문단이 ESG 핵심 이슈에 대해 꼭 짚어 설명드리는 'ESG Bulletin'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Anti-ESG 논란에 대한 이해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한국경제인협회 ESG경영자문단)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우파정당이 약진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우선주의를 중요 가치로 내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가 촉발한 먹고사는 문제는 이제 세계 정치권력의 이동을 넘어 1995년 설립된 지난 30년간 WTO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글로벌 무역질서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세 변화는 ESG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ESG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규제변화를 읽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해야 하는 경영자들에게 최근 심상치 않은 국제 정세 변화는 단기 그리고 중기 ESG 이행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Anti-ESG 와 ESG 제도화 수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반ESG(Anti-ESG)를 다루는 국내외 언론 기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Anti-ESG 기사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지만, 점점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2020년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공급망실사법(CSDDD), ESG

공시법(CSRD 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SG 규제에 대응해 ESG 경영체제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던 주장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속도조절이나 완화조치와 같은 단어들에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Anti-ESG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Anti-ESG는 ESG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정의 과정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신제도주의이론에 따르면 제도란 공동체 구성원들이 당연히 하면서 공유하고 있는 가치체계를 의미하며, 조직은 제도의 공식적인 도입(Formal Adoption)을 통해 생존력을 높이게 된다. 제도에 순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사멸하게 된다. 제도는 규정이나 법률과 같이 공식적인 제도가 있는가 하면, 규범이나 상식 등 비공식적인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공식적인 제도를 경성규제, 비공식적인 규제를 연성규제라 부르기도 하는데, ESG 분야의 대표적인 연성규제로는 ESG 평가가 있다.

2020년을 전후해 글로벌 선진기업들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기 시작한 이후 지난 5년간 우리는 비공식적인 형태로 개별 기업의 선택에 의존하던 것에서 공식적인 제도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경험했다. 배터리 규제법(EUBR), 그린워싱방지법(Green Claim Directive)과 같은 ESG 규제들이 시행에 들어갔고, 기업들은 이사회산하 ESG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공식적인 조직구조를 채택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왔다. 그리고 산림벌채법('26년), 디지털제품여권제도('26년), 공급망 실사법('27년) 등 다수의 ESG 규제들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Anti-ESG는 ESG가 상당부분 공식적인 제도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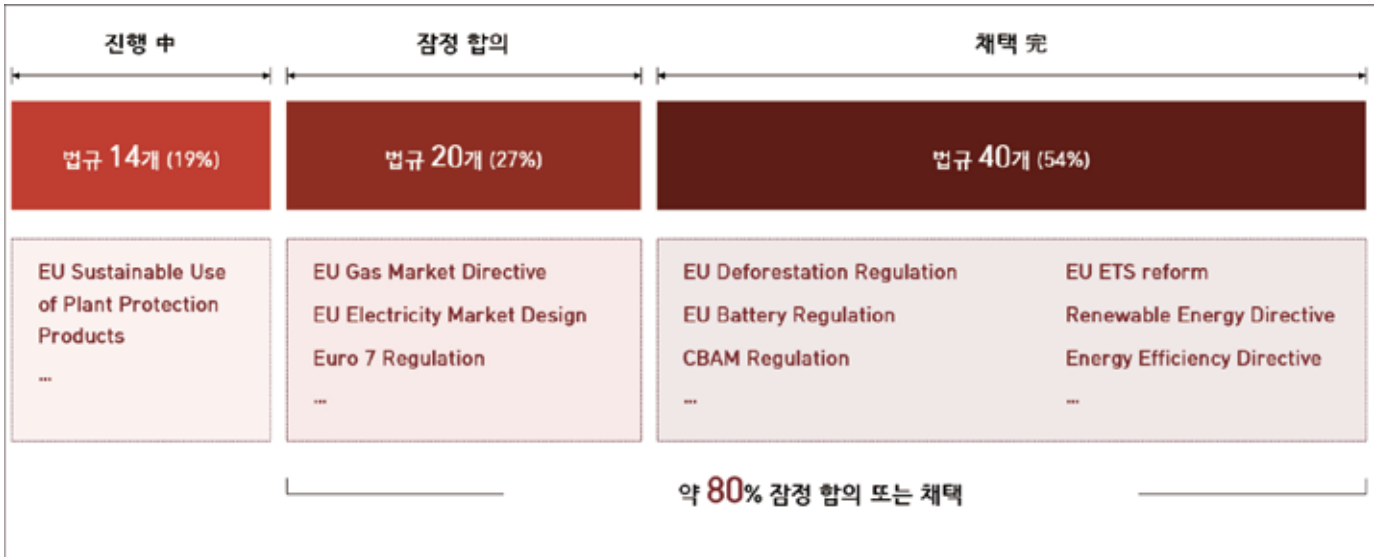
ESG가 하나의 제도로써 사회공동체에 의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지기 위해서는 제도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기존 시스템에 기반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과 그 조직이 속해 있는 생태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방어전략을 쓰게 된다. 예를 들어 탄소국경조정세(CBAM)라는 제도가 도입되면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이 높은 기업은 탄소 감축전략이 없으면 생존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규제 저항을 통해 전환에 필요한 시간을 벌고, 자원(정부 지원 등)을 끌어 들일 수 있으며,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기존 생산설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상당기간 전유(Appropriability)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CBAM에 조기에 대응한 기업과 격차를 줄일 수도 있다. 결국 Anti-ESG에 대한 논란은 ESG가 하나의 제도로써 안정성이 확보되어 가는 일시적 조정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SG 제도화 수준에 대한 이해

그렇다면 ESG 제도화는 어디까지 진행된 것일까? 상대적으로 ESG 규제도입이 활발한 EU의 경우 ESG 관련 규제는 약 74개('24년 10월 기준, 그림 2. 참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규제가 채택되어 실행단계에 들어간 규제가 40개, EU회원국간 합의가 완료된 규제가 20개, 그리고 현재 논의 중인 규제가 14개로 확인된다. ESG 관련 74개 규제 가운데 약 80%가 이미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그림 1. 참조), 속속

이행단계에 접어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ESG 간소화법 등 완화법안들이 논의되며 EU 조차도 너무 지나치게 ESG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EU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ESG 규제 도입을 주저하게 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미 ESG 관련 규제 가운데 약 80% 채택되어, 오히려 일부 저항이 큰 ESG 규제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통해 제도화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 ESG 관련 규제입법 현황 > (그림 1)



ESG 조정기의 기업의 선택

ESG가 조정기에 들어가며 Anti-ESG에 대한 논란이 커지며 일부 기업에서는 최소한의 활동만을 유지하거나, ESG 팀을 축소하고, 심지어 Anti-ESG 흐름에 동참하는 움직임들도 감지된다. 앞서 강조하였던 것처럼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ESG 제도화는 이미 비가역적인 단계에 접어들어 제도화에 실패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오히려 일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시행에 들어가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가 제도화에 실패할 것을 대비하거나 적어도 조정기 동안, 저자세(Low-Key) 전략을 통해 ESG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 기업의 위험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기업이 ESG를 강조하건 혹은 강조하지 않더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인류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원자재의 조달과 생산과정에서 환경과 인간에게 덜 유해한 생산활동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더 좋은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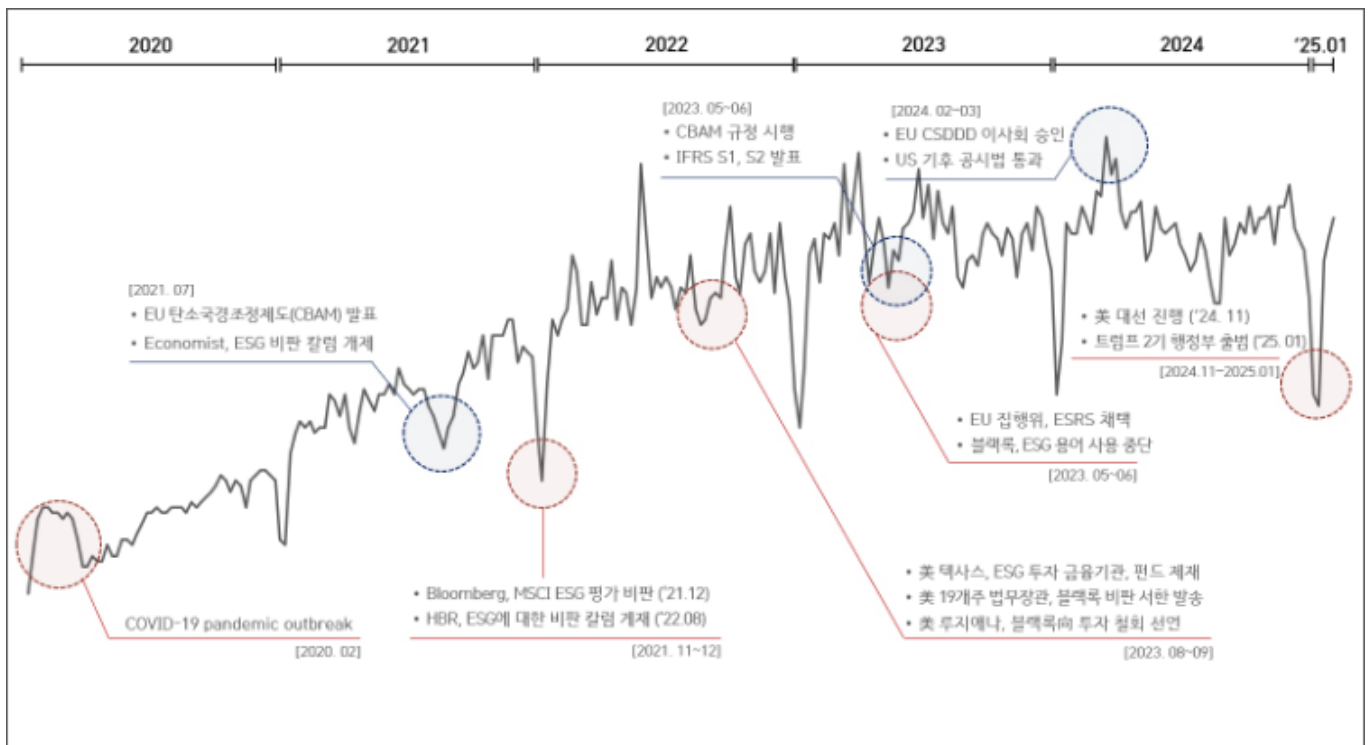
따라서 ESG Low-Key 전략을 추구하기 보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편이 ESG 조정기의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2020년 이후 ESG가 급속히 확산되는

과정에서 기업간 ESG 활동의 모방(Mimic)이나 ESG 정책의 도입(Saying)과 실행(Doing)간 괴리(Decoupling)가 발생하며 기업의 실제 ESG 활동성과 보다 지나치게 과장되어 커뮤니케이션 되는 Washing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었다. 때로는 특정 사업장의 일부 성과를 과도하게 부풀려 일반적인 기업의 성과인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정교한 분석 없이 20년, 30년 뒤 탄소중립 목표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제시하고 성과달성이 불확실해지자 추가적인 설명없이 파일을 수정하여 홈페이지에 올려 놓는 경우도 있었다. ESG 조정기동안 우리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해야 할 것은 Low-Key 전략이 아니라 ESG 활동에 대한 오차를 바로잡는 수정활동이 타당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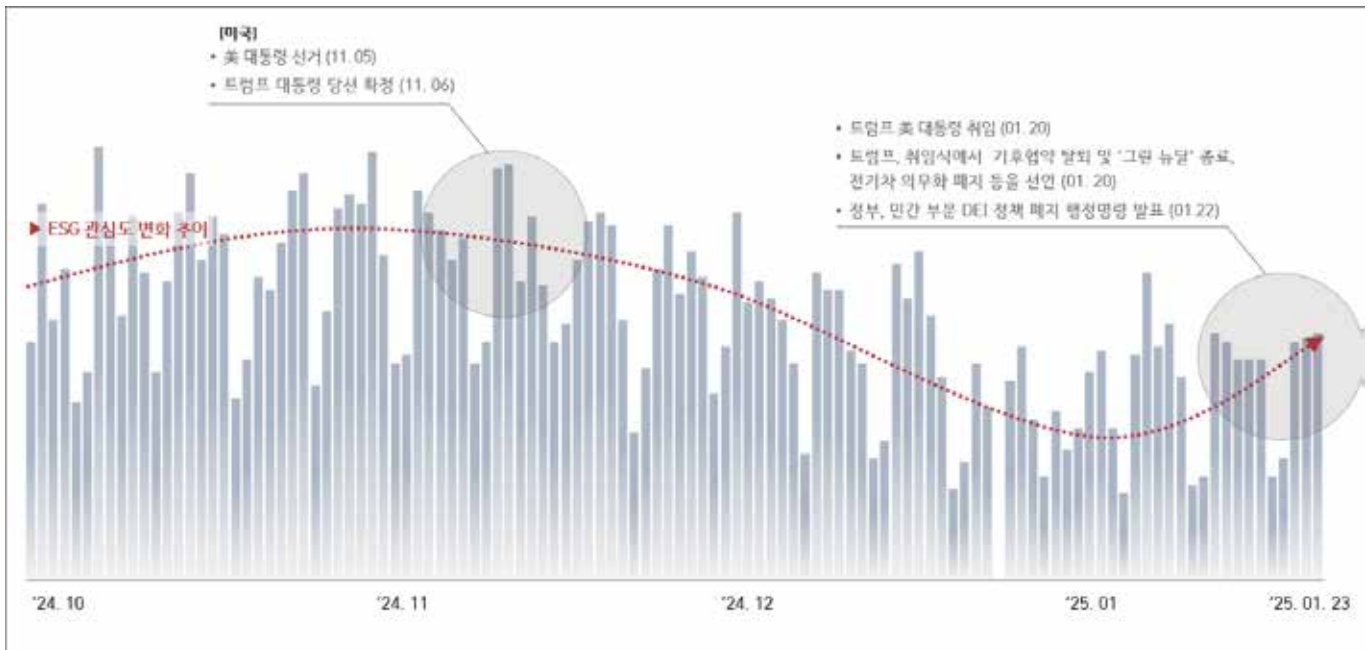
‘25년 ESG 전망

최근 ESG에 대한 관심 변화를 분석해 보면 두가지 특이점이 확인된다. 하나는 자국우선주의가 주목받기 시작한 ‘24년 중반부터 ESG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 올라가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2. 참조). 다른 하나는 단기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더라도 곧장 회복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3개월간 ESG 관심 변화를 살펴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ESG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떨어졌으나, 출범 후에는 오히려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ESG가 상당한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2)



<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 변화 (최근 3개월) > (그림 3)



Weaponized ESG의 시작 (무역장벽으로 진화하는 ESG)

사실 이러한 ESG에 대한 관심의 변화를 보면 ESG 자체에 대한 반감보다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ESG를 중요 정책으로 채택하기도 하고, 오히려 폐기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UFLPA(신장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와 같이 중국을 견제하는 ESG 정책은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국 제조기업에게 불리한 ESG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25년에는 더 노골적으로 자국우선주의 수단으로 ESG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자국산업을 보호하거나 수입제품을 제재하는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무기화된(Weaponized) ESG의 시작이다.

결국, ESG가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로서 우리사회에 정착하려면 제도화 과정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ESG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막연하게 인류 공동의 번영을 주장하던 거추장스러운 명분을 벗어 던지고, 보다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의 결과를 최근 Anti-ESG를 통해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기업을 제약하는 CBAM은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제품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화석연료에 기반하여 생산함으로써 수입국 경쟁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Weaponized ESG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지역의 ESG 규제 특성과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특성에 따른 더욱 치밀한 ESG 규제 대응전략이 필요해 보인다.